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8,400,000	11,052,000
일반회계	357,800,000	10,734,000
특별회계	10,600,000	318,000
기타특별회계	10,600,000	318,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910,000	57,3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03,000	57,09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782,000	23,4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45,000	43,3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77,000	14,31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531,000	75,930
치수사업특별회계	1,432,000	42,960
기반시설특별회계	120,000	3,6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834,60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